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알림

1. 관련 :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2호)
2.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·도, 축산 단체 및 유관 기관 등에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홍보·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,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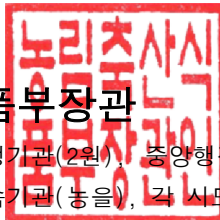
○ 주요 개정내용

- 종전에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투표로만 축산단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로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(제8조제6항)

○ 공포일 및 시행일: 2024. 1. 25.

붙임.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2호)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9부), 중앙행정기관(19청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4처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산하기관(농병), 소속기관(농을), 각 시도(나 01-18), 축산단체,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

주무관 김해일 사무관 이재승 축산경영과장 전결 2024. 1. 24. 이연섭

협조자

시행 축산경영과-543 (2024. 1. 24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337 팩스번호 044-868-0127 / haeil23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